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56

발의연월일: 2020. 6. 18.

발 의 자:위성곤·양경숙·이개호

홍문표 • 서삼석 • 신동근

윤재갑 • 이상직 • 허 영

박 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일·채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현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지원 사업이 호평을받고 있음.

그런데 청소년기의 부족한 과일·채소 섭취와 불균형한 식습관에 따른 비만 및 각종 성인병 발생 등의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나, 과일·채소 등 제공에 대한 학교의 역할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적인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또한 어린이·청소년 시절 형성된 과일·채소 섭취 부진과 불균형적인 식습관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국내 농산물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음. 이는 우수한 품질의 국내 농산물생산기반을 약화시

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학교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·채소 등의 특산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포함한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제공 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만들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농산물 섭취를 유도하고,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증진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제2항 신설). 법률 제 호

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학교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활성화와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·채소 등의 특산 농산물 및 그 가공품, 국내에서 생산된 과일·채소 등의 농산물 및 그가공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	개 정 안
제26조(학교에서의	식생활	교육)	제26조(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)
① (생 략)			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		② 학교는 제1항에 따른 식생
			활 교육 활성화와 학생의 올바
			른 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해당
			지역에서 생산된 과일ㆍ채소
			등의 특산 농산물 및 그 가공
			품, 국내에서 생산된 과일·채소
			등의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등
			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
			<u>야 한다.</u>
② ~ ④ (생 략)		<u>③</u> ~ <u>⑤</u> (현행 제2항부터 제4
			항까지와 같음)